

제목 :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 3. 25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1조 적용범위 ~ 제3조 거래장소 <생 략></p> <p>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 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어음 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<u>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 기, 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<u>(신설)</u>,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<u>지급 전에</u>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 <신 설></u></p>	<p>제1조 ~ 제3조 <좌 동></p> <p>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 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<u>입금할 때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 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등록된 생체정보(이하"바이오 정보"),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없이 (이하"무통장")도 거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, 성명, 상호, 대표자명, 대리인명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(이하 'PIN-Pad기"라 한다)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,</u>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<u>첫거래 전에</u>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 제 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	<p>용어명확화 : 생체정보, 실명확인증표 등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방법 추가</p> <p>문구추가</p> <p>신설</p>

<p>② <생략></p> <p>④ <신설></p> <p>제6조 입금 ~ 제8조 증권의 부도 <생략></p> <p>제9조 이자</p> <p>① ~ ③ <생략></p> <p>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<u>통장에 표시하며, 또한</u> 변동 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<u>기록하여 안내한다.</u></p> <p>⑤ <생략></p> <p>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</p> <p>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<신설></p> <p>제 10조 지급·해지청구</p> <p>① 거래처가 <u>통장으로</u>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<u>(신설)</u>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③ <좌동></p> <p>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,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<u>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 ~ 제8조 <좌동></p> <p>제9조 이자</p> <p>① ~ ③ <좌동></p> <p>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<u>통장,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,</u>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<u>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.</u></p> <p>⑤ <좌동></p> <p>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</p> <p>① ~ ② <좌동></p> <p>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<u>자동 종료하며,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. 잔액이 0 원으로 된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.</u></p> <p>제 10조 지급·해지청구</p> <p>① 거래처가 <u>(삭제)</u>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<u>신고한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비밀번호를 PIN-Pad기에 입력하고,</u>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번호 체하</p> <p>제4조에 따른 신설</p> <p>안내방법 추가</p> <p>신설</p> <p>문구수정</p>
--	--	---

<p><u>② <신 설></u></p> <p>②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·<u>바이오인증</u>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~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<생 략></p> <p>제14조 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 ① ~ ④ <생 략></p> <p>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<u>서면으로 하여야한다.</u></p> <p>제15조 통장, 카드의 재발급 등 ~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<생 략></p> <p>제17조 면책 ① ~ ② <생 략></p>	<p><u>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·<u>바이오정보</u>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11조~제 13조 <좌 동></p> <p>제 14조 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 ① ~ ④ <좌 동></p> <p>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<u>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5조 ~ 제16조 <좌 동></p> <p>제17조 면책 ① ~ ② <좌 동></p>	<p>신설</p> <p>바이오인증→ 바이오정보</p> <p>문구추가</p>
<p><u>③ <신 설></u></p> <p>③ <생 략></p> <p>④ <생 략></p>	<p><u>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u></p> <p>④ <좌 동></p> <p>⑤.<좌 동></p>	<p>신설</p> <p>번호체하</p> <p>번호체하</p>

<p>제18조 수수료 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제1항,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<u>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.</u></p> <p>제19조 오류처리 등 ~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<생략></p> <p>제21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<u>한달간</u>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<u>다음 각 호의</u>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<u>1. 제1항에 의한 게시</u></p> <p><u>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</u></p> <p><u>3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</u></p> <p><u>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</u></p> <p><u>5. 거래통장에 표기</u></p> <p><u>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</u></p> <p>③ <생략></p>	<p>제18조 수수료 ① ~ ② <좌동></p> <p>③ 제1항,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<u>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</u></p> <p>제19조 ~ 제20조 <좌동></p> <p>제21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<u>(삭제) 그 내용을</u>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<u>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</u>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<u>1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 또는 휴대전화(SMS, MMS)에 의한 통지</u></p> <p><u>2. 거래통장에 표기</u></p> <p><u>3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</u></p> <p><u>4.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</u></p> <p><u>5.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(애플워치 등)에 의한 통지</u></p> <p>③ <좌동></p>	<p>안내방법추가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안내방법 변경</p>
--	---	--

<p>제22조 약관의 적용순서 ~ 제24조 이의제기 <생략></p> <p>제25조 <신설></p> <p><부칙> (신설)</p>	<p>제22조 ~ 제24조 <좌동></p> <p>제25조 위법계약의 해지 거래처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부칙> 이 약관은 2021.0.3.25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금융소비자에 관한법률 반영</p> <p>신설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